#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 발의연월일: 2020. 6. 1.

발 의 자: 추경호·강기윤·강대식

강민국・곽상도・구자근

권명호 · 권영세 · 김기현

김도읍・김미애・金炳旭

김상훈 · 김석기 · 김선교

김성원 · 김승수 · 김영식

김예지 · 김용판 · 김 웅

김은혜 · 김정재 · 김태흠

김형동 · 김희곤 · 김희국

류성걸 • 박대수 • 박대출

박덕흠 • 박성민 • 박성중

박수영・박완수・박 진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백종헌 • 서범수 • 서병수

서일준 · 서정숙 · 성일종

송석준 · 송언석 · 신원식

안병길 · 양금희 · 엄태영

유경준 • 유상범 • 유의동

유두현 • 유영석 • 유재옥

윤주경 · 윤창현 · 윤한홍

윤희숙 • 이달곤 • 이만희

이명수 · 이양수 · 이 영

이 용 · 이종배 · 이종성 이주환 · 이채익 · 이철규 이헌승 · 임이자 · 장제원 전봉민 · 전주혜 · 정경희 정동만 · 정운천 · 정점식 정진석 · 정찬민 · 정희용 조경태 · 조명희 · 조수진 조태용 · 조해진 · 주호영 지성호 · 최승재 · 최춘식 최형두 · 태영호 · 하영제 하태경 · 한기호 · 한무경 허은아 · 홍문표 ·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10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의 국내 확산 이후 국민의 일상이 무너지고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되었으나, 수도권 감염이 다시 확산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등의 경제심리 위축과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고 있음. 또한 기업의 투자 부진이 고용 및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생산성향상 등 특정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만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간 임시투자세액공

제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2017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기업의 일반 사업용자산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며,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는 과세특례 대상을 현행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적용기한을 2021년 말까지 1년 연장함으로써 민생경제의 안정을 지켜내고자 함(안 제27조, 제99조의11 및 제108조의4제1항제1호·제2호).

####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 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 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11제1항제1호가목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100"으로 하

고, 같은 호 나목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0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4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7조(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내		
	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		
	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		
	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		
	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		
	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		
	<u>다.</u>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제99조의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 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 당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을 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 외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 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1호 의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2호에 따라 계산

	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
	<u>야 한다.</u>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트	투자금
	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u>다.</u>	
제	99조의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	에 대
	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 감면비율: 다음 각 목의 구분
  에 따른 비율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감면대상사업장: 100분의 60
  - 나.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 업이 경영하는 감면대상사 업장: 100분의 30
- 2. (생략)
- ② ~ ③ (생 략)
- 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3항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 1. (생략)
  - 2.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

 1
7}
: <u>100분의</u> <u>100</u>
나
: <u>100분의 60</u>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u>2020년 7월 1일부터 2021</u> 년 12월 31일까지
 1. (현행과 같음)

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사업자가 둘 이상 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 한다)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인 경 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 을 기준으로 한다.

3. (생략)

② ~ ⑤ (생 략)

<u>5천만원</u>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